

제40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5월24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2)
2.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3)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9)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
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7)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2)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0)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5)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7)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8)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5)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3)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6)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8)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2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7)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5)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4)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0)
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0)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상정된 안건

1.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2) …… 3
2.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3) …… 3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9) …… 3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
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 3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 …… 3
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7) …… 3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2) …… 3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0) …… 3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 3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 3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 …… 3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 3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5) …… 3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7) …… 3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 3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8) …… 3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5) …… 3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3) …… 3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6) …… 3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8) …… 3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 …… 4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 …… 4
2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 4
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 …… 4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61) …… 4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7)	4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05)	4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4)	4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0)	4
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	4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0)	4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18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전 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법률안 등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한 법률안과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교통포럼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12)
2.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3)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89)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39)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2)

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737)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922)
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520)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1)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
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5)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17)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
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38)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5)
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3)
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6)
2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8)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281)
2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117677)
2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
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217)
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561)
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807)
3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105)
3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304)
3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340)
3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3)
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0)
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1분)

○위원장 김민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8항까
지 총 38건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김정재 소위원
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
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국토 분야 소관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를 진행하여 총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
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본 의원이 대표발

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섯 차례의
논의를 거쳐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보증금이
최대 5억 원 이하인 자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
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
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
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
하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조
세 안분 특례, 금융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
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
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로 상향하려는 것이
입니다.

다음,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
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선 보증 후 등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 홍기원 의원, 민홍철 의원
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격증 대여 등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공익사업에 정원조성 사업을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녹색건축 등 인증
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국토교
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
용 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에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건설자재·부재의 증빙 입력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 관련 공사목적물의 기준을 구조내력에 따라 위임하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을 추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수급인의 고지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최인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4월 25일과 5월 9일,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17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영상물 시청 행위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김병욱 의원, 소병훈 의원, 최강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 의무화 규정을 이륜차에 준용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송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김수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사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윤두현 의원, 최춘식 의원, 민형배 의원, 오영환 의원, 이소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음터널에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및 소음발생 구간에서는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홍기원 의원, 김교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이후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최인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조금 전에 보고도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말 전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우선 김정재 국토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과 아쉬운 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선 구제, 후 회수’ 같은 핵심적 요구

사항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법안에서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너무 좁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토위에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장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시다. 물론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부득이한 불참이라고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심사되는 날 이렇게 장관의 불출석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출석을 해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부족한 점은 양해해 달라, 앞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애도한다, 이런 말씀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만 해도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들이 굉장히 무리한 제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원희룡 장관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건설노조 건포크 물이를 통해서 한 노동자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도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장관에게 명확한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전체회의에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장관에게 타워크레인 노조 문제를 질의한 바 있는데 노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주장을 펼치셨고 전수조사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걸 팩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자 국토부 측에 의뢰를 했고 자료를 받아 보니 딱 두 쪽짜리가 제출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건설협회에 조사해서 제출한 불법행위 유형별 현황 표 하나 왔고요. 또 하나는 그 실태조사를 위해서 뿌린 양식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자료 꼭 제출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불법행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일체 이것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논의하러 출장을 간 것 이것 정말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장관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사자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부분 사과 요구와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 말씀드린 대로 일체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손을 들)

○위원장 김민기 지금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심상정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사실은 법안 의결이 다 끝나고,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법안 상정을 한 이후에 자료 요구하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장관님의 불출석 사유로 의사진행발언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이것 의결한 이후에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기왕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덧붙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이 만약에 많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딱 한 분이시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심상정 위원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안 처리 이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나 건설노동자들을 그냥 무슨 어디 공갈 협박범처럼 이렇게 폭도로 몰아가면 이분들을 사지에 내모는 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서 결국은 한 분이 분신을 하셨는데 주무 책임 장관으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페이스북에 마치 이게 기획 분신인 것처럼 그런 의구심을 드러내는 입장을 표명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국토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점을 오늘 장관이 출석했으면 저는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장관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현안질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 점을 잘 살피서 의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부실했다는 얘가지요,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여야 간 간사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경기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법안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이 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최근에서야 보게 됐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쉬운 점도 큰 것이 사실이고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책적인 보완 조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전세사기 구제 대상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빠졌습니다. 하나는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고, 두 번째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전세사기 상태에 빠져서 등기나 점유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가 불가하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최대 90%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납입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5억 원이었다고 하면 최대 4억 5000까지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 피해자가 됐는데도 서민이 아니라서 구제를 못 한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아파트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그 입주 전에 부도가 나서 등기도 못하고 점유도 못 한 이런 피해자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유형,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버리고 갈 것인가,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사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사각지대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정부가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현재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리 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긴급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조세채권 안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 전 사기 문제는 이 부분들은 점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계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들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분들도 역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저리 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긴급주거 대상은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차관님, 지금 저리 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대출을 의미하시는 것이지요? 신규 대출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대환대출도

가능하고 또 신규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예컨대 5억 원 전세금인데 4억 5000을 대출을 끼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담보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원하는 것은 신규로 대출을 또 받아서 이 대출금이 들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대책은 고려 안 해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신용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협의를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장기분할상환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유예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게 협의가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피해자가 피해자로 확인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리 대출하고 긴급복지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된, 올라온 법안에 따르면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상담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에 따르면 신규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의 상환 기한을 유예한다거나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논의하신 적이 없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법적 대상이 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점유도 하지 않고 정식 계약……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긴급주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리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요건에 맞으면 해당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신규 대출을 다시 받으라고 할 수가 없는 분들이라고요.

기존에 몇 억 원의 대출을 끼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주택은 날아갔기 때문에 이걸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어져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돈으로 이걸 상환합니까? 이분들 사지로 내모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 아니니까, 이분들 서민 아니니까 또는 이것 악용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버리고 갈 겁니까, 아무 대책도 안 주고?

기존 대출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같은 것들은 정부가 역할을 하면 얼마든지 금융권을 통해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기본적으로 입주 전 사기 같은 분들은 실제로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 아니고 또 실제로 입주도 하지 않은, 점유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분들하고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다 정부는 버리고 가실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법을 적용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이 법에서 마련을 하신 거고요. 이 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어쨌든 지금 여야 합의로 법안이 소위에서 통과한 상황이니깐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구제가 어렵다고 해서 어떠한 구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령 경매유예 같은 것도 정부가 금융권에 협조를 구해서 얻어 낸 어떤 방식인 거고요, 구제 방식인 거고요. 그런 구제도 고려받지 못할 정도로 이분들이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소영 위원 자산은 5000만 원밖에 없고 4억 5000만 원 대출금을 지금 갚아야 하는 분들에게 정부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고 집행하려면 분명히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건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피해자 요건을 법에서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누가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김민기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지금 차관님 말씀을 잘 들어 보니까 기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은 받고, 그 상담을 받는 게 다고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회복도 돕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전세금을 다 환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되고—기존 대출이 있다면—그러니까 기존 대출에 대해서 장기 저리로 분할상환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있겠느냐, 이런 질의를 이소영 위원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 타령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고 정책 사항 아닙니까, 행정부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정책인 경우에도 이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들어갈 내용뿐만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한 어떠한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각지대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없앨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빠른 판단과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국 위원님부터 손을 드셨는데 김희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金熙國 위원 여야 위원 여러분, 우리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한 3법을 논의하면서 기본적인 정치철학은 이랬습니다. 첫째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만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까지 확대해서 볼 거냐 이 두 가지 논점 중에서 순수한 개인 책임 플러스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정치철학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법리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 부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 어떤 법이든 간에 완벽한 법은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6개월간, 1년간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야가 느끼는 감정이 동일합니다. 야당은 그분들을 내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은 우리 당으로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법안을 개정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양곡법, 간호법 같은 것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이 비극적인 상태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어 낸 점에 대해서 깊은 자부심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 간사 위원님들, 맹성규 단장님,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한 달 이상 계속된 자료 작업에 수고한 정덕기 팀장님, 이장원 과장, 김효정 국장, 권혁진 실장, 이원재 차관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피해자 구제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오랜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지금 피해자들이 말씀하시는 이 법의 사각지대나 아쉬운 점에 대해서 토론했던 사람으로서 다른 것은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대출 장기분할상환이라는 것은 신용회복 차원에서 HUG라는 보증기관이 만기 연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 시중은행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당국에서 말하자면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만기를 연장해 줘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게 이 취지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신용을 유지해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도 못 받는 분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 그것은 이분들에게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식 피해자로 인정해서 모든 것에 혜택을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5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차관님이 보고할 때 정부가 각종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법률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범위에서 충분히 법안을 고치지 않더라도 정책 당국에서 그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좀 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데 입주 전 사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도 안 돼 있고 계약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일반 금융 대출 과정에서 다 어떤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피해자로 넣자는 저희 제안은 안 된다고 끝까지 정부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주거 지원이라든지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격 자체가 기존 대출 장기 분할상환은 다른 이해당사자가 없어요. 보증기관이, 말하자면 HUG가 만기 연장해 주는 겁니다, 갚는 것을. 그리고 분할 납부하도록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하면 이것은 충분히 정책 차원에서 피해자로 100%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를 당한 건 사실이니까 이런 지원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부가.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저리 대출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리 대출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여러 가지 필요한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대출 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 피해

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입주 전 사기 문제 같은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법안을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이 사각지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다투는 그런 프로세스를 두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일단 입주 전 사기 문제는 법안소위에서도 논의한 것처럼 이 부분들은 이 피해자로 포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상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입주 전 사기도 있고 5억 이상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세사기가 명백한데 이게 자기한 사람만 지금 현재 피해자로 확인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기준은 수사 개시로 돼 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후에 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로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권리는 줘야 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운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저는 전북 익산 출신입니다.

이번에 특별법 제정에 국토소위 위원님들하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차관님, 이번에 이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아직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피해자로 신고하신 분이 한 5000여 명 됩니다.

○김수홍 위원 5000여 명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현재로서는 5000여 명이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태, 상황 발생

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정부 재정 지원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재정은 아니고요.

○**김수홍 위원** 그래도.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재정 지원은 저희가 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이런……

○**김수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방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거 약자들이 이번의 전세 피해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도 주거 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방에 정부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택 하나 소유하면서 자기들의 평생 한을 풀까 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들이 합의해서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홍 위원** 지금 고금리 속에 임대업자는 분양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임차인들은 일정 기간 지났으니까 분양을 해 달라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사업자한테 독려는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전혀 응하지 않다 보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부한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사업장별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그래서 주거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지역적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균형발전도 이루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얻는다고 보니까 차관님이 특별히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김수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 박상혁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순

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답변을 큰 목소리로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시든지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법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여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지금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생각을 여쭙보고 싶어요.

차관님, 작년 8월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에—작년 8월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전세 대란이 다시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 이렇게 정부에서 입장을 낸 것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정확하게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상혁 위원**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였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입장 내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임대차 3법은 3법의 시행에 따라서……

○**박상혁 위원** 임대차 3법 중에 신고법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임대차신고법.

○**박상혁 위원** 신고법이 어떻게 지금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나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올해 2월에도 원희룡 장관님은 ‘임대차 3법이 이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택임대차신고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박상혁 위원** 아니, 신고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임대차 관련된 3법이 같이 통칭해서 문제가……

○**박상혁 위원** 아니, 신고법이…… 개별 개별 법률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신고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고 그 당시 국토부와 함께 노력해서 만든 법안인데요. 여기 뒤에 계신 국토부 관계자들이 저와 함께 노력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심지어 우리 국회에서는 의정대상으로 수상을 받았던, 좋은 법률로…… 전세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택임대차신고법의 내용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하면 그 가격을 신고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오히려 그 법이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축적됐더라면 주택임대차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어떻게 그게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왜 이념적으로 접근하세요?

주택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다른 두 법도 2020년 8월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전부터, 2017년 이후 2018년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HUG 보증보험이 훨씬 더 많은 배상을 해 줬던 것, 보상을 해 줬던 것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다른 주택임대차 2법에 관련된 내용이…… 그런 임대차 개혁을 해서 2년, 3년 뒤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18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나타나고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누누이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깡통 대책 문제를 얘기했을 때 계속 정부에서는 전세안심 앱만 만들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왜 이렇게 주택임대차 3법……

아까 말씀해 보세요. 신고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 저하고 같이 법안 성안했던 국토부 공무원들은 방조범이나 공범입니까?

정부가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또다시 주택임대차 3법 개정하실 거예요?

국토부, 신고법 개정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상혁 위원 아니, 법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먼저 신고법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하나의 법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중에서 제 질문은 신고법이 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개별법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지금……

○박상혁 위원 그런 평가와 분석도 없이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신 겁니까?

주택임대차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왜 전세사기와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건 오히려 아주 예전에 만들어져서 시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들을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좋은 법 아닙니까? 그것을 2020년에 와서야 시행을 한 게 문제지요.

앞으로 이 정부가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과거 정부 탓하고 예전에 자신들이 했던 일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다시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올 가을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일단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전셋값이 워낙 오른 상황에서 지금 전셋값이 한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역전세들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게 어차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반환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자율적인 구제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앞으로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섭 위원 국토법안소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그저께 소위 끝나고 대책위 분들 잠깐 뵈는데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나 심상정 위원님이 제안했던 특별법 내용,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그에 대해 포기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낸 법안…… 물론 많이 양보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의 안과 정의당의 안 그리고 다른 여당의 국회의원들께서 제기하셨던 걱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폭넓게 해 주시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건 소위 때도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

쉬운 부분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범위를 넓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6개월마다 보고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보완입법을 통해서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을 하자라고까지 같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억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그런데 4억 5000만 원까지, 90%를 대출받았으면 4억 5000만 원 받은 건데.

아까 상환대출 말씀하셨어요, 저리로 상환대출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러면 4억 5000만 원 빚이 있는 상태에서 저리로…… 상환대출이라고 하면 그 금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저리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전세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빚을 갚고 나서 또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지요. 또 전세대출이 가능하냐요, 상환대출 이외에?

즉 지금 4억 5000 빚이 있어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빚이 있어요, 사기 당한. 그것을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했어요. 저리로 받고 기간은 10년, 20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새롭게 대출이 가능하냐요, 5억 이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분들은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갚다가 대환해 가지고 하든지……

○조오섭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아니면 신규 대출을 받든지……

○조오섭 위원 그러면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살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오섭 위원 그것은 어제 즉 이야기했던 건데 임시방편적이고.

그래서 5억 이상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기존 대출을 10년에서 20년으로 장기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경매 중지를 요청했었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부에서 입법을 앞더라도 정책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서 사기자이지만 법에 의한 사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H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서 법률적 사기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 전 사기 문제인데 소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건축왕 남 모 씨가 전세금을 모았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부도가 났어요. 전세금 났던 것이 전부 폐인 거예요. 그러면 입주도 못 했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 전 사기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얘기했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대출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매우 애석하지만 전세 피해를 당했지만 법률적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아니다, 하지만 애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장기분할대출로 전환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희망이라도 좀 드리지요. 피해 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희망은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법상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법률적 상담이라든지 긴급주거 지원이라든지 또 장기저리대출에 관한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오섭 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을 되돌아하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분할상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또 문제 발생하면 그때

뒷북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지요. 함께 노력 좀 해 보시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 관계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 김정재 국토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참 어려운 법안 합의를 이루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법안을 지금 우리가 의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라는 지금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국회 앞에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왜 국가는 존재하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과 사회적 재난의 문제를 가지고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의 전세사기 피해는 같은 유형의, 형태의 대규모 범죄 피해가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인정이 되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민홍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없나,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한 구제가 필요한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 법률에 범죄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물론 요건은 엄격하지요. 있습니다. 사적 피해에 대해서, 사기나 범죄에 대해서 국민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떤 요건에 의하면 정해 놓고 피해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규모 경제적인 상황에서 사적 기업에 의해서—그것은 사적 분야지요—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왜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못 하나, 저는 정말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를 했던 게 피해 보증금에 대한 일부라도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특별법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결국은 뭘니까? 피해를 봤는데 피해에 대한 일

부 구제는 없고 그 피해에 대해서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우선매수권이라는 게 뭘니까? 그 집에서 살던 당신들이, 피해를 본 피해자 여러분들이 빚을 내서 다시 그 집에서 살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전세대출금을 빚지고 있어요.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또 대출을 해 줘가지고 빚을 지게 해서 거기서 살도록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왜 이렇게밖에 국가가 할 수 없냐,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물론 6개월마다 다시 판단해서 개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피해구제는 일부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쉽고요. 그래서 조오섭 의원안처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국가나 LH나 HUG나 자산관리공사가 인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반환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정말 아쉽다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거듭, 심상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소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입주 전 사기 문제 그리고 5억 이상의 피해자들 문제, 현재 법안 구성을 보니까 위원회에서 피해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 결정 전에 상담을 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현재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아까 차관님께서도 입주 전 사기 피해자라도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담지원센터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이런 문제, 점유를 안 하고 피해자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피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전향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건 정책적인 문제다 이거지요. 법률적인 문제가 물론 연관은 돼 있겠지만

금융정책적인 문제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말씀하신 보증금에 대한 직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민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지만 그 대신에……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의 차이가 이게 사적 자치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사회적 재난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것은 다수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경제적인 영역에서 대기업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적 분야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래서……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이번에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사적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경직된 정부 정책이 아니냐.

법률은 만들어 주면 위헌이 아닌 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 다 인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산관리공사나 여기서 그 값을 20%든 30%든 쳐주고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한 방법을 반영 못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렇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예를 들면 우선매수권이라든지 또 경·공매 대행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지방세 감면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저리대출, 특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 저희가 10년간 무이자 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방안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민기**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원안과 비교할 때 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적은 법률안과 비용추계를 의뢰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심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되 소위원회에서 쟁점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되는 조항을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4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장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6장 및 부칙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4항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법안 상정 이후 27일 만입니다.

다섯 번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정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

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간 법안 논의 시 정부가 보여 준 미온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다양한 제안을 소극적 태도로 마지못해 일부만 수용하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경매 대행 서비스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부대의견에 담긴 대로 매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법의 집행 속도가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이미 약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복지 지원 사항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0항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7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2항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25항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5항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38항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이원제 차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 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9.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713)

(11시19분)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헌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의원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부산진구를 출신의 이헌승 의원입니다.

제가 19대국회 등원부터 10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간사와 위원장직을 역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니까 소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해주신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간사이신 김정재·최인호 위원님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1년,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이자 다수당일 때 우리 국회에서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인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고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이후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은 그 입지가 해상에 위치하여 공사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공항과 함께 도로·철도 등의 복합공사가 수행되면서 무엇보다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최 전인 29년 연말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필요한 만큼 건설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사업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

면,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하며 공단의 주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로 하고 공단의 주된 사무소를 소재지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3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조사와 이와 연계되는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정부 위탁 공항 건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가덕도신공항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자금의 조달 및 차입 등 건설 소요비용과 관련한 규정들을 명시하여 공항 건설 관련 공단의 예산 확보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상에 본 법안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 설립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가덕도신공항은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를 하고 24년 말 공사 착수를 통해서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공단의 설립이 절실합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의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해상매립 및 접근교통시설 건설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또한 과거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역시 당초에는 신공항 건설기획단, 한국공항공단 내의 신공항건설본부 등의 조직 변경을 거쳐서 결국에는 공단을 설립해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지리적으로 외해의 깊은 연약 지반을 매립하는 등 고난이도 사업인 만큼 전문성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을 통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도

록 존경하는 국토위 선배·동료 위원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이현승 전임 국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별도 건설공단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자는 의견과 가덕도신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별도 공단 설립 시 현재 건설 중인 다수 공항에 대한 공단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단 설립에 따라 약 5년간 1578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공단 설립 시 3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건설공단 신설의 필요성, 재정 소요와 인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제정법률안이지만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 데 동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

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모두에 자료 요구와 의사진행발언은 이때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의사진행발언 하셨지요?

○박상혁 위원 이 법률안과 관련돼서입니까?

○위원장 김민기 자료 요구요?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 아니, 법률안……

○위원장 김민기 법률안이 아니어도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자료 요구 겸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준호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차관님, 장관님께서 건설노동자 고 양희동 님의 죽음에 대해서 ‘노조가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SNS 게시한 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에요, 자료 요구. 질의응답을 하지 마시고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한꺼번에 다 하시라면서요.

○위원장 김민기 의사진행발언까지요?

○박상혁 위원 예.

○위원장 김민기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거고……

○박상혁 위원 아니, 현안 발언 잠깐만……

○위원장 김민기 현안 발언? 현안 발언이요?

○박상혁 위원 따로 있어요?

○위원장 김민기 현안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상혁 위원 한꺼번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위원장 김민기 그러면 여야 간사님 합의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몇 분이 하실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면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꺼번에 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예,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기 그렇게 하시지요.

○박상혁 위원 시간……

○위원장 김민기 시간 주시지요.

○박상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뭐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것에 대해서……

○박상혁 위원 건설노조가 이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방조를 하거나 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묻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관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마치 건설노조가 굉장한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방조 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묻고 수사를 받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수사 상황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상혁 위원 경찰은 ‘현재 자살 방조 혐의 발견 못 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왜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가 났는데 장관은 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자마자 제대로 된 유감이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자 마치 노조가 이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이 죽음을 방조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 것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되어서 공식적인 자료나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건설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장관은 이렇게 발언하고 계신 건지 답변해 보세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발언 자체가 그리고 언론보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났는데 이를 정정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발언이 전혀 없었어요.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의견들을 계속 내는 건지 차관께서 답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일단 근로자의 분

신 사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뿐만이 아니고 또 건설 사업자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근절을 해서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건설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것입니다.

○박상혁 위원 국토교통부는 주거권 보장 등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 부서인데 오히려 이렇게 전혀 관계도 없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우리 장관의 표현대로라면 마치 이념에 사로잡힌 그런 태도로 국토교통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도 질의했던 임대차 3법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정확한 법 개별 개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정치성 발언, 이념에 사로잡힌 발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일주일 내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그리고 전월세신고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떻게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개별 개별 전세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이어서 원희룡 장관의 망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국의 국토부장관이 특정 언론에 기대서 은근슬쩍 본심을 말하는 게 참으로 궁색하고 충격적입니다.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재나 연락조차 없이 기자가 알아서 쓴 기사다’, 일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YTN 기자는 노조 간부가 계속 고인의 분신 시도를 말렸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주무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건폭 물리로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죽음을 모욕하고 있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국토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반드시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지난번에 12월 29일인가요, 건설현장 불법 근절 민관협의체도 구성해서 첫 회의를 차관님이 주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심상정 위원 그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 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 민관협의체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도에 보면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건설업계예요. 또 장관님, 차관님이 건설현장을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떤 분을 만나셨나 보도자료를 보니까 원도급사 CEO,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 이런 건설 관련 협회, 모두 건설사 관계자들이예요. 그분들 만나서 노동자와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해달라는 이야기를 주로 주고받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실태조사도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조사에 참여했나 보니까 또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이런분들이 주로 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설사만 만나셨어요. 건설현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건폭 물이로 흉악범으로 내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노동자, 노동조합 만나셨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언제 만나실 생각이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건설현장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지 부당 금품 수수라든지 채용강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워낙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조사들을 위해서 건설현장의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고요.

○심상정 위원 실태조사를 빙자해서 이분들 만나서 빨리 노조 고소·고발해라, 신고해라 이 말씀하고 다니신 거지요, 그동안에. 제가 다 파악하고 직접 만나도 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설현장 핵심 문제가 뭐예요? 불법 하도급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심상정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불법 하도급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도 나오고 임금 체불도 나오고 노조를 가장한 조폭

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공사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 때문에 이러저러한 비리들이 누적돼 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해법을 찾는 게 국토부가 할 일이지 노사 갈라치는 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 위원 지금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건설노동자, 건설노조, 원·하청 포함한 건설업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 다 모아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하루이틀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이해관계가 엮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근절 의지를 갖고 앞으로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사회적 논의기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카드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전자카드와 직접지급제가 언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2015년에 LH공사부터 적용한 얘예요.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매번 재탕, 삼탕 대책만 발표를 해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노동자들과 대화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이 관계되는 부분들……

○심상정 위원 노동자들은 그냥 박멸해야 될 대상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들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어명소 2차관님, 시간이 없는데요. 2공항 부지에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제가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시추 자료를 공개했더니 폐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왜 폐기하셨습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제가……

○심상정 위원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폐기하고 대신에 사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답변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5월 12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사이에 사진도 폐기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도 지사 시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용암동굴이 존재한다면 활주로를 옮겨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진솔하게 시민사회계가 제기하는 용암동굴의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토부가 자료로 응답해야 됩니다. 자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가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제가 5월 12일 날 요청했거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준호 위원 원래 오늘 장관님이 계셔야 이런 질의응답도 제대로 하는데…… 1차관님이 고생을 하시네요.

같은 내용인데 원희룡 장관님 5월 17일에 폐복글 올리셨는데 그것 내리셨습니까? 혹시 확인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렇지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언론사의 주장을 가지고, 그것도 국토부장관이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을 확대 생산하면서 고양회동 열사 죽음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건설노조가 장관 상대로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고발당하셨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한준호 위원 고발당하셨어요. 제가 지난 3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 하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기사들 전부 특정 노조의 독점적인 압력에 의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특정 노조에 의한 압력을 행사받은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돼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전수조사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준호 위원 아니, 전체,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다라고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저희가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준호 위원 너무 피해 가지 마시고……

조사가 제대로 다 된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조사 정도는 했는데 장관이 의도한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한장짜리 딱 하고 보내오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상대로 했습니까? 이게 12개 사용자단체에게 뿌려 가지고 받은 거지요. 이게 무슨 전수조사입니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팩트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들, 예를 들어 사용자단체에게 양식을 뿌려 가지고 이들이 낸 이것을 가지고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전적으로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언가를 받아 가지고 국토부장관이 건폭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린 거란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고는 페이스북에다 글은 저런 식으로 써놓고…… 이건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을 벌여 놓고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관련된 사용자단체들이 제출했다고 하는 그 증빙 자료들 전체 다 의원실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저희가 조사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조사된 범위 내가 아니라 사용자

단체들이 낸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로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 증빙 자료들 다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원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확인……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담당자인 사무관이 저희한테 구두로 얘기하기를 이것밖에 없대요. 그것도 양식을 뿌려 가지고 실태조사했다 이렇게 저한테 구두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구두로라도 답변을 했겠지요. 그것 다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심상정 위원께서도 장관에게 질의를 할 때 ‘실태조사, 전수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자료 생산해 냈냐’라고 했더니 장관은 그때 ‘자료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자료 정리한 거 있냐’라고 했더니 ‘확인을 못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말이지요.

그러니까 확인도 되지 않고, 전수조사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장관님 나와서 자꾸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도록 차관님들이 옆에서 제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자꾸 와서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자꾸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어서 짧은 의사진행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 요구를 위원회 측에서 하나 드렸었고요. 조금 전 1차관님께도 부탁을 드리긴 했지만 전수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들 받아서 혹시 필요한 의원실에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정동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승 전 위원장님께서 아까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가덕

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해서 공사 난이도가 높고 조속한 건설이 필요합니다. 건설 업무 담당할 사업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차관님, 인정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해상 공사이고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게 적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전담 조직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하고 또 별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양립한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기존 조직은 신공항 건설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별도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기존에 인천공항 공사랑 한국공항공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설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인천공항공사도 옛날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간사이 공항도 그렇고 홍콩 첵랍콕 공항도 그렇고 대부분 건설공단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전담 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정동만 위원 이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의 논의가 진전된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지금 저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재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앞으로 할 겁니다. 하고 있으니까 건설공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 사업인데 이번 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방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대도시광역교통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정관선 사업은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광역교통위원장님도 최근에 저희 지역에 방문해서 한번 보시고 가셨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예,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동해남부선하고 또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한데 광역철도 예타통과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이 부분에 정관선 사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상반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대상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게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상반기에 무조건 선정 사업이 돼야 됩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여기서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어명소 예,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기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차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28인)

강대식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수홍	김정재
김학용	김희국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박정하	서범수	서일준
심상정	엄태영	유경준	이소영
장철민	정동만	조오섭	최인호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청가 위원(1인)

권영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전문위원	최용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
제2차관	어명소
기획조정실장	김홍진
주택토지실장	권혁진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직무대행	이병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선교	·	국민의힘	2023. 5. 18.

○의안 회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윤준병·김용민·이성만·양정숙·
이수진(비)·민형배·김원이·민병덕·소병훈·
김승원·오영환 의원 발의)

4월 28일 회부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양경숙·강득구·김남국·김병주·
김의겸·김한규·김홍걸·민병덕·박영순·
서영교·신영대·전용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대식·김용관·하영제·유경준·
박성민·백종현·배준영·이명수·김선교·
박대수·안철수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8. 강대식 · 김용관 · 하영제 · 유경준 · 박성민 · 백종현 · 배준영 · 이명수 · 김선교 · 박대수 · 안철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일 회부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박상혁 · 장철민 · 김정호 · 어기구 · 송옥주 · 박정 · 김남국 · 김병욱 · 김주영 · 최종윤 · 정성호 · 임종성 · 홍기원 · 진성준 · 허영 · 이동주 · 윤후덕 · 조오섭 · 김수홍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장철민 · 김승남 · 이정문 · 정일영 · 김상희 · 강훈식 · 박상혁 · 김종민 · 허영 · 신영대 · 김주영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주영 · 김병기 · 박상혁 · 소병철 · 양기대 · 어기구 · 이개호 · 이병훈 · 이원욱 · 장경태 · 장철민 · 정일영 · 한병도 · 홍기원 · 황운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장철민 · 이정문 · 정일영 · 김상희 · 강훈식 · 박상혁 · 김종민 · 허영 · 신영대 · 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3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박정 · 이상현 · 이병훈 · 어기구 · 소병훈 · 도종환 · 윤후덕 · 박영순 · 유정주 · 송옥주 · 양기대 · 김두관 · 전해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민철 · 한준호 · 최인호 · 홍영표 · 민홍철 · 김홍걸 · 고민정 · 이동주 · 김교홍 · 윤준병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김민철 · 한준호 · 최인호 · 홍영표 · 민홍철 · 고민정 · 이동주 · 김교홍 · 윤준병 · 김홍걸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4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김정호 · 박상혁 · 어기구 · 정춘숙 · 김윤덕 · 박재호 · 서동용 · 허종식 · 정성호 ·

임종성 · 윤후덕 의원 발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 발의)

(2023. 5. 4. 김수홍 · 김정협 · 김남국 · 김병욱 · 김주영 · 노웅래 · 박상혁 · 박성준 · 서영교 · 서삼석 · 송재호 · 안규백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심상정 · 장혜영 · 양정숙 · 배진교 · 이은주 · 강은미 · 류호정 · 정성호 · 강성희 · 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8일 회부됨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소병철 · 오영환 · 김두관 · 김승남 · 주철현 · 윤재갑 · 김원이 · 서삼석 · 서동용 · 신정훈 의원 발의)

5월 9일 회부됨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김수홍 · 강득구 · 고민정 · 김정협 · 김남국 · 김병욱 · 박상혁 · 신정훈 · 이상현 · 안규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홍기원 · 강득구 · 천준호 · 유정주 · 장경태 · 정일영 · 정주영 · 김민철 · 김병기 · 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회부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민홍철 · 김두관 · 임종성 · 박상혁 · 전해숙 · 양경숙 · 송재호 · 김교홍 · 강득구 · 정필모 · 김윤덕 · 김민철 · 윤호중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조오섭 · 김원이 · 김정호 · 박상혁 · 송갑석 · 안민석 · 어기구 · 우원식 · 윤영덕 · 이동주 · 이용빈 · 이형석 · 주철현 의원 발의)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배준영 · 金炳旭 · 이양수 · 김웅 · 최춘식 · 양금희 · 류성걸 · 정경희 · 강대식 · 허종식 · 윤창현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강훈식 · 정춘숙 · 신정훈 · 김한규 · 박재호 · 이용빈 · 장철민 · 이원택 · 임호선 · 김성주 · 허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1. 엄태영 · 김학용 · 유경준 · 김정재 · 강대식 · 박정하 · 김선교 · 김희국 · 김상훈 · 지성호 · 한무경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1. 엄태영 · 김학용 · 유경준 · 김정재 · 강대식 · 박정하 · 김선교 · 김희국 · 김상훈 · 지성호 · 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회부됨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2. 김병욱 · 정성호 · 박상혁 · 김한규 · 강득구 · 한준호 · 김민석 · 조오섭 · 서영석 · 이용빈 · 천준호 · 김영진 · 김민철 · 허종식 · 최인호 · 허영 · 장철민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2. 전재수 · 송기현 · 박재호 · 최인호 · 한병도 · 신영대 · 김병주 · 유정주 · 전용기 · 정필모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2. 양향자 · 김주영 · 박성준 · 설훈 · 최연숙 · 이용선 · 한정애 · 김성원 · 이종성 · 김홍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2. 이용선 · 민형배 · 김영호 · 홍정민 · 심상정 · 서영석 · 황희 · 이용빈 · 전용기 · 양향자 · 양정숙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2. 이용 · 엄태영 · 김형동 · 김예지 · 임이자 · 홍문표 · 서범수 · 류성걸 · 구자근 · 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5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5. 홍기원 · 홍영표 · 박상혁 · 김윤덕 · 신영대 · 한준호 · 소병철 · 강득구 · 이수진(비) · 이원욱 · 윤후덕 · 김경협 의원 발의)

5월 16일 회부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6. 서병수 · 강기윤 · 김성원 · 류성걸 · 박수영 · 박진 · 안철수 · 양금희 · 지성호 · 홍문표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6. 김정재 · 강대식 · 유경준 · 엄태영 · 한무경 · 김학용 · 박정하 · 정희용 · 이태규 · 양금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회부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

(2023. 5. 17. 최춘식 · 박대수 · 배준영 · 김희곤 · 정운천 · 한기호 · 성일종 · 하영제 · 송석준 · 노용호 의원 발의)

5월 18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8. 한준호 · 김영진 · 최인호 · 정일영 · 유정주 · 박용진 · 김경협 · 박상혁 · 김상희 · 김병기 · 홍정민 · 최종윤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9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9. 박상혁 · 김승남 · 김정호 · 김성주 · 김수홍 · 허영 · 임오경 · 황희 · 이정문 · 민홍철 · 이동주 · 조오섭 · 김윤덕 · 장철민 · 민형배 · 김민기 · 김병욱 · 윤후덕 · 홍기원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9. 박상혁 · 김승남 · 김정호 · 어기구 · 김성주 · 김수홍 · 허영 · 황희 · 이정문 · 민홍철 · 이동주 · 조오섭 · 김윤덕 · 장철민 · 민형배 · 김민기 · 김병욱 · 윤후덕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3. 5. 19. 박상혁 · 김승남 · 김정호 · 어기구 · 김성주 · 김수홍 · 허영 · 임오경 · 황희 · 이정문 · 민홍철 · 이동주 · 조오섭 · 김윤덕 · 장철민 · 민형배 · 김민기 · 김병욱 · 윤후덕 ·

홍기원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조오섭 · 오영환 · 송갑석 · 윤영덕 · 최종윤 · 우원식 · 이형석 · 소병훈 · 조웅천 · 한준호 · 김승남 · 김원이 의원 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한정애 · 김승남 · 홍정민 · 문진석 · 이성만 · 김정호 · 윤미향 · 이원욱 · 송옥주 · 정성호 · 민홍철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조오섭 · 윤영덕 · 최종윤 · 우원식 · 김승남 · 소병훈 · 김원이 · 한준호 · 어기구 · 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2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김민철 · 한준호 · 김병욱 · 김병기 · 오기형 · 권철승 · 최인호 · 김철민 · 이병훈 · 홍영표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허종식 · 송재호 · 김윤덕 · 김용판 · 양정숙 · 민홍철 · 최인호 · 정춘숙 · 윤준병 · 장철민 · 신동근 의원 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허종식 · 어기구 · 유동수 · 박성준 · 이성만 · 김정호 · 박찬대 · 김교홍 · 박상혁 · 한준호 · 배진교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강기윤 · 조명희 · 박대수 · 백종현 · 서병수 · 최형두 · 최춘식 · 김용판 · 김영선 · 하영제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한기호 · 이양수 · 노용호 · 권성동 · 유상범 · 김희곤 · 이철규 · 이현승 · 유의동 · 지성호 · 성일종 · 송기현 · 엄태영 의원 발의)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만희 · 전봉민 · 박성민 · 김웅 · 조은희 · 장제원 · 김용판 · 김상훈 · 정우택 · 이채익 ·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엄태영 · 김학용 · 유경준 · 김정재 · 강대식 · 박정하 · 김선교 · 김희국 · 김상훈 · 지성호 · 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5. 16. 정희용 · 김정재 · 김희곤 · 구자근 · 박덕흠 · 엄태영 · 윤두현 · 노용호 · 한무경 · 유경준 · 박형수 의원 발의)

5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박상혁 · 김승남 · 김정호 · 김성주 · 김수홍 · 허영 · 임오경 · 황희 · 이정문 · 민홍철 · 이동주 · 조오섭 · 김윤덕 · 장철민 · 민형배 · 김민기 · 김병욱 · 윤후덕 · 홍기원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5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제명	공포번호	공포일
대통령령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45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457호	2023. 5. 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458호	
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05호	2023. 4.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06호	2023. 4. 25.

구분	제 명	공 포 번 호	공포일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2023. 5. 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2023. 5.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01호	2023. 5.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 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505호	2023. 5. 4.